

1. 개정이유

어선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규정도 있어 어선법 지도·단속기관과 어선소유자 간 분쟁도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기술 발전에 따라 임시검사가 불필요한 경우는 삭제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히 하여, 어선소유자의 임시검사 수검 의무를 완화하고 임시검사 수검여부에 대한 어선법 지도·단속기관과 어선소유자간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삭제함(안 제47조 제1항 각호)

나.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선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을 마치고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임시검사 수검 시점을 변경함(안 제47조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깊이”를 “깊이의 변경”으로,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를 “주요부를 교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탱크, 펌프실, 그 밖에 인화성”을 “인화성”으로, “전선을 교체·변경하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를 “전선을 교체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본문 중 “변경하려”를 “교체하”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를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을 “변경 등을 하는”으로, “개조 또는 수리를 시작했을 때부터”를 “변경 등을 완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목을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다만, 가목의 경우 기관의 출력을 증·감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추진기관(추진용 전동기를 포함한다), 그 밖의 내연기관(30PS 이상에 한한다)

나. 추진기관용 동력전달장치

다. 프로펠러축

라. 발전기(5KW이상에 한한다)

3. 타(舵) 또는 조타장치를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9.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에 관한 기준의 신규 적용 또는 어선용품을 신설·증설·교체·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여 승인받은 복원성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다만, 별표 1에 따른 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임시검사) ① 법 제21조제 1항제4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7조(임시검사) ① ----- ----- ----- -----.
1. 배의 길이, 너비, <u>깊이</u>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선체 <u>주요부의 변경으</u> <u>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물이</u> <u>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u> <u>성질)</u> 또는 <u>방화성에 영향을</u> <u>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u> <u>려는 경우</u> 가. ~ 라. (생 략)	1. ----- <u>깊이의 변</u> <u>경</u> ----- ----- <u>주요부를 교체하-</u> ----- ----- ----- ----- -----
2. 어선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 관 및 그 <u>주요부의 교체 · 변</u> <u>경 등으로 기관의 성능에 영</u> <u>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u> <u>를 하려는 경우</u>	2.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목</u> <u>을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u> <u>(다만, 가목의 경우 기관의 출</u> <u>력을 증·감 변경하는 경우를</u> <u>포함한다)</u> 가. <u>추진기관(추진용 전동기</u> <u>를 포함한다), 그 밖의 내</u> <u>연기관(30PS 이상에 한한</u> <u>다)</u> 나. <u>추진기관용 동력전달장치</u> 다. <u>프로펠러축</u>

	라. 발전기(5KW이상에 한한다)
3. 타(舵) 또는 조타장치의 변경으로 어선의 조종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3. 타(舵) 또는 조타장치를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탱크, 펌프실, 그 밖에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압가스가 새거나 축적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교체·변경하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4. 인화성 ----- ----- ----- 전선을 교체하는 경우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7. 어선용품 중 어선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제7호(어로설비는 제외한다), 제8호, 제11호의 설비로 한정한다.	7. ----- ----- -- 교체하-----. 다만, ----- ----- ----- -----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9. 복원성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적용받거나 그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용	9.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에 관한 기준의 신규 적용 또는 어선용품을 신설·증

<u>품을 신설·증설·교체 또는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u>	<u>설·교체·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여 승인받은 복원성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다만, 별표 1에 따른 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의 경우는 제외한다)</u>
10. ~ 12. (생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u>해양사고 등으로 어선의 감항성(堪航性)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u>	<삭제>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u>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u>	③ ----- <u>변경 등을 하는 -----</u> ----- <u>변경 등을 완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u>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